

kiri Weekly

2013.8.19 제247호

이슈

금융산업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한 논의

포커스

글로벌 보험그룹의 구조조정과 시사점: Aviva Group 사례

글로벌 이슈

브라질 경제 불안과 시사점

미국 연준의 9월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과 시사점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김세환 부장 / 02-3775-9051)



금융산업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한 논의

정원석 연구위원

요약

- 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발표하였는데 소득공제 축소 그리고 금융, 의료 등으로 부가가치세 확대를 적시하였음.
 - 이는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여 세수확대를 위한 과세기반 확충이 목적인 것으로 보임.
- 금융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로 소비자 체감가격 상승 시 세금의 귀착문제와 사회후생 감소의 문제를 고려해야 함.
 - 소비자가 가격에 덜 민감할수록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세금이 귀착되므로 가격에 따른 수요탄력성을 고려하여 누가 세금을 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 부가가치세 과세로 가격이 상승할 경우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는 소비량을 줄이고 그에 따라 재화의 공급량도 줄어들게 되며 사회전체의 후생은 감소하게 됨.
 - 과세로 인해 줄어든 사회후생보다 세수를 이용한 정책이 더 많은 후생을 창출할 수 있어야 효율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임.
- 금융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많은 논의가 있어 왔음.
 - 현재는 선진국에서도 금융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금융중개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경우 아직까지 일치된 의견이 없으나, 금융중개서비스 이외의 실제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우세함.
- 보험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로 인한 영향이 클 수 있음.
 - 금융중개서비스 이외의 실제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가능하다는 의견에 비추어 볼 때 보험 수수료와 보장성보험 등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사업비 비중이 높은 보험상품의 경우 상대적 부담이 클 수 있음.
 - 보장성보험 비중이 높은 손해보험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가격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음.

1. 검토배경



■ 금융산업은 국민생활 및 산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부가가치가 큰 산업임.

- 금융산업은 200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7.55%를 차지하는 산업이고 그 비중은 꾸준히 성장해 왔음.¹⁾
- 금융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로부터 유발되는 부가가치의 비중은 타 산업보다 높음.²⁾

■ 그런데 최근 조세재정연구원은 “중장기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통해 금융·의료용역, 학원 등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확대를 제안했음.

- 어떠한 형태로든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따른다는 큰 틀에서 볼 때 조세재정연구원 제언은 당위성이 있음.
- 지금까지 금융 혹은 보험서비스를 통해 발생하는 부가가치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어왔음.
- 동 제언은 정부 공약사항의 이행(복지확대)을 위한 세수 확대가 가장 큰 목적으로 보임.
 - 2009년 기준 OECD 평균 국민부담률은 24.6%이고 사회보장지출비율은 22.1%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19.7%이고 사회보장지출비율은 9.4%였음.
 - 국민부담률과 사회보장지출비율 모두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이에 본고에서는 중장기조세정책 방향의 제언 내용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확대의 당위성 및 금융산업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함.

- 금융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당위성을 살펴보고 과세 시 누가 세금을 내게 되는지 그리고 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

1) 이창훈(2009), 『금융산업의 경제기여도 분석』,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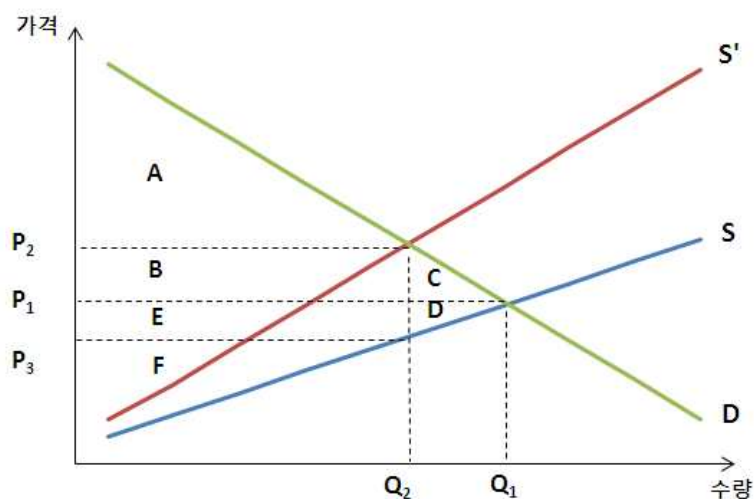
2) 이창훈(2009), 『금융산업의 경제기여도 분석』, 금융감독원.

2.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경제학적 효과에 대한 논의



-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³⁾임.
 -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재화의 거래 혹은 판매 시 과세되므로 소비세와 혼동되기 쉬우나 거래과정에서의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한다는 점에서 소비세와는 개념적으로는 다름.
 - 예를 들어 제분업자가 밀 1,000원 어치를 구입하여 11,000원 어치 밀가루를 생산해서 판매한다면 제분업자에게는 이 과정에서 창출된 10,000원의 부가가치에 대해 10%인 1,000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어 최종 소비자 가격은 밀가루 값 11,000원에 부가세 1,000원을 더한 12,000원이 됨.⁴⁾
- 부가가치세로 인해 금융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경우 그 영향은 금융산업, 소비자 모두에게 미치게 됨.
 - 세금으로 인한 가격 상승은 재화(서비스)의 소비량 감소와 그로 인한 공급량 감소로 이어짐.

〈그림 1〉 부가가치세 부과 시 후생의 변화



3)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기 때문에 물건의 판매에 과세하는 판매세와는 다름.
 4) 일반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은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으로 결정됨.

■ <그림 1>에서 보듯이 부가가치세 부과로 인한 가격 상승은 사회후생의 재분배 및 세금의 귀착효과를 가져오게 됨.

-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을 때 균형점은 재화(서비스) 가격 P_1 에 소비량 Q_1 이고 소비자는 A+B+C 만큼의 소비자 잉여를 누리고, 서비스 공급자는 D+E+F 만큼의 생산자 잉여를 누리게 됨.
- 부가가치세 부과로 인해 소비자가 체감하는 서비스 공급곡선이 S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S'로 이동하였을 때 새로운 균형점에서의 소비량은 Q_2 세금을 포함한 시장가격은 P_2 가 되고, 이때 생산자는 세금부분($P_2 - P_3$)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이익을 취하게 됨.
- 이 경우 소비자는 A 부분만을 소비자 잉여로, 생산자는 F 부분만을 생산자 잉여로, 정부는 B+E 부분을 조세수입으로 취하게 되고, C와 D 부분은 소비자, 생산자 그리고 정부 어느 누구도 향유하지 못하는 사중손실(Deadweight loss)로 사라지게 됨.
- 정부의 조세수입 B+E 중 B 부분은 소비자의 후생으로부터 얻은 부분이고, E 부분은 생산자의 후생으로부터 얻게 되는 부분임.

■ 소비자의 가격에 대한 소비탄력성에 따라서 세금을 누가 더 많이 내게 되는가가 결정됨.

- 소비자가 가격에 민감하게(탄력적)⁵⁾ 반응할수록 세금이 소비자에게 귀착(B)되는 것은 완화됨.
 - 저렴한 가격 때문에 인터넷으로 보험을 가입할 정도로 가격에 민감한 젊은 층은 부가가치세 과세로 인해 보험가입을 줄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반면, 소비자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경우 세금은 소비자에게 더 많이 귀착됨.
 -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보험은 소비자에게 모든 세금(B)이 귀착됨.

■ 현재 경제학 이론에서는 소비자와 생산자 어느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느냐에 대한 명쾌한 답은 존재하지 않음.

- 보험에 대한 부가가치세 도입에 앞서 세금의 귀착 대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새로이 부과되는 세금을 누가 얼마만큼 더 내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함.
- 누가 얼마만큼 내게 될지를 예측 한 후 과세대상의 확대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5)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한 경우 작은 가격의 변화에도 수요량은 크게 변화함.

■ 세금으로 인한 사회후생의 감소분과 세수증가 및 세출 확대에 의한 비용편익분석이 필요함.

- 부가가치세 과세로 인한 조세수입(<그림1>에서 B+E 부분)을 이용한 새로운 정부 사업의 편익증진이 사중손실(<그림1>에서 C+D 부분)보다 크다면 부가가치세 과세가 효율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음.

3. 금융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타당성과 범위



가. 금융산업에 대한 부가가치 계산방법과 부가가치세의 부과 사례

■ GDP 계산 시 금융산업의 부가가치는 크기는 금융중개서비스로부터 생산되는 부분과 실제서비스로 인해 생산되는 부분으로 나누어 계산함.⁶⁾

- 은행예금취급기관⁷⁾의 부가가치는 실제서비스와 금융중개서비스 부분의 합에서 중간투입을 차감한 값임.
 - 실제서비스는 송금수수료, 수입수수료, 보증료, 신탁보수 등 금융기관이 실제로 제공하는 서비스로부터 얻는 산출임.
 - 금융중개서비스는 자금잉여부분의 자금을 예수하여 자금수요부분에 대출하는 기능으로 예대마진으로부터 얻는 산출임.
 - 중간투입 경비로는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수선유지비, 차량비, 임차료 등이 있음.
- 비은행예금취급기관⁸⁾의 경우 기본적으로 은행과 같은 기준을 적용함.
- 증권회사의 경우 예금취급기관과 유사하게 고객예탁금에 대한 수입이자와 지급이자를 이용하여 금융중개서비스를 계산하고 각종 수입수수료를 더하여 실제서비스를 계산함.
- 생명보험 및 비생명보험의 산출액은 순수입보험료, 추가보험료, 수입수수료 등에서 지급보험금과 지급준비금 증가분을 차감하여 계산함.

6) 한국은행(2012), 『우리나라의 분기 국민계정』.

7) 일반은행, 특수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을 포함하는 예금은행.

8) 상호금융, 은행신탁, 투신운용, 종합금융, 우체국예금 등.

■ 세계적으로 금융산업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은 있으나 실제로 과세되는 경우가 적음.

-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보편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과세영역으로 삼고 있지 않거나 과세 영역으로는 삼으나 면세를 하거나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음.⁹⁾
- 미국은 부가가치세가 존재하지 않음.¹⁰⁾
- 호주, 일본, 멕시코 등의 국가는 예외적으로 금융중개서비스 이외의 일부 항목에 간접세가 적용되고 있음.¹¹⁾
- 뉴질랜드에서는 보장성보험에 대해 시간별 현금흐름에 따라 보험료와 청구권의 차이로 부가가치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음.

■ 세계적으로 금융산업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논리적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가 있음.

- 금융산업이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되는가는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음.
- 금융산업에 부가가치세 부과 시 경제의 왜곡 및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음.¹²⁾
- 금융산업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할 때 가치가 증가한 부분만을 골라 세금을 부과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¹³⁾

나. 금융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한 논의

■ 금융서비스의 경우 부가가치의 원천에 따라 논의 방향이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음.

- 금융중개로부터 얻는 이자수익은 미래소비 시 자산의 가치 하락 분을 보존해 주는 역할을 할 뿐 특별한 부가가치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음.¹⁴⁾
- 반면, 이자수익이 자산의 가치하락 분을 보존해 주는 것만으로도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¹⁵⁾

9) OECD(1998), "Indirect Tax Treatment of Financial Services and Instruments".

10) 미국은 주별로 판매세만 존재함.

11) OECD(1998), "Indirect Tax Treatment of Financial Services and Instruments".

12) Merrill, P. and H. Adrion(1995), "Taxation of Financial Services under a Consumption Tax",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13) 이창희(2002), 『금융보험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서울대 법학.

14) William Jack(2000), "The Treatment of Financial Services under a Broad-Based Consumption Tax", *National Tax Journal*, Vol.53, pp. 841~851.

15) Department of Treasury(1984), "Tax Reform for Fairness, Simplicity and Economic Growth".

- 이자 이외의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학계의 주류임.

■ 금융중개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다음과 같음.

- Grubert and Mackie(2000)는 현재소비와 미래소비의 가치를 같게 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결국 최종소비단계에서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면세되어야 한다고 보았음.¹⁶⁾
- Chia and Whally(1998)는 금융산업 같은 중간재는 거래를 활성화시키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효용을 생산하는 것은 아니므로 금융산업에 부가가치세 부과 시 경제에 왜곡 및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음.¹⁷⁾

■ 반면, 금융중개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은 다음과 같음.

- Merrill and Adrion(1995)는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 중 금융중개서비스에만 면세 시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융서비스가 과도하게 이용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주장함.¹⁸⁾
- Auerbach and Gordon(2002)은 세후소득과 소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모든 중간재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하며 금융산업도 예외일 수 없다고 주장함.¹⁹⁾

■ 금융중개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과세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주류임.

- Jack(2000)은 금융중개 이외의 서비스는 왜곡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과세가 가능하다고 봄.²⁰⁾
- McCann and Edgar(2003) 역시 금융중개 이외의 서비스는 다른 분야로의 파급효과가 적으므로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았음.²¹⁾

16) Grubert and Mackie(2000), "Must Financial Services be Taxed under a Consumption tax?", *National Tax Journal*, Vol.53, pp. 23~40.

17) Chia and Whally(1998), "The Tax Treatment of Financial Intermediaries", *Journal of Money, Credit, Banking*, Vol.31, pp. 714~719.

18) Merrill, P. and H. Adrion(1995), "Taxation of Financial Services under a Consumption Tax",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19) Auerbach, A. J. and R. H. Gordon(2002), "Taxation of Financial Services under a VAT", *American Economic Review*, Vol.92, pp. 411~416.

20) William Jack(2000), "The Treatment of Financial Services under a Broad-Based Consumption Tax", *National Tax Journal*, Vol.53, pp. 841~851.

21) McCann, E. and T. Edgar(2003), "VAT Treatment of Interest and Financial Services with Competitive Banking and Insurance Sectors", *Tax Notes International*, Vol.30, pp. 791~820.

다. 학계의 논의에 기초한 금융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가능 범위

■ 은행, 증권 등은 금융중개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은행의 송금수수료, 수입수수료, 보증료, 신탁보수 등 금융기관이 실제로 제공하는 서비스로부터 얻는 산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증권 역시 거래수수료 등 실제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금융중개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므로 보험산업의 경우 저축성보험은 사업비중 일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 저축성보험에서 상품설명과 계약체결에 대한 대가(신계약비)²²⁾는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보험회사 보험을 유지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발생하는 수금비 및 유지수수료에서 비용을 제한 부분 역시 부가가치세 대상이 될 수 있음.
- 하지만 저축성보험의 납입보험료 혹은 이자수익은 과세대상이 되기에는 논리적 근거가 충분치 않음.

■ 보장성보험의 경우 서비스의 모든 부분이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 저축성보험과 마찬가지로 신계약비와 유지관리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될 수 있음.
- 보험을 통한 Risk hedge 서비스에 대한 대가의 부분 역시 부가가치세 대상이 될 수 있음.
 - 엄밀한 의미에서는 보장성보험은 위험물이라는 원자재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이므로 위험물 차익만큼 만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라는 논리가 가능할 것임.
 - 보장성보험의 청구권과 납입보험료의 차액에 대해 과세를 하자는 의견이 있음.²³⁾

■ 금융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 측면에서 당위성을 가지지만 전면적 시행을 위해서는 논리적 그리고 기술적인 준비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어떠한 서비스가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될 것인지 그리고 얼마만큼을 부가가치로 볼 것인지는 앞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임.

22) 신계약비는 설계사 수당과 보험회사 예정비용으로 나뉘는데 설계사 수당과 예정비용 중 실제 비용을 뺀 부분을 신계약에 대한 부가가치로 볼 수 있음.

23) Barham, V., S. N. Poddar, and J. Whalley(1987), "The Tax Treatment of Insurance under a Consumption Type", Destination Basis VAT, *National Tax Journal*, Vol.40, pp. 171~182.

- EU 등의 국가에서도 부가가치세의 범위와 기술적 과세 가능성을 놓고 오랫동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4. 결론 및 제언



■ 금융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자원의 재분배 및 사회후생의 감소를 일으킬 수 있음.

- 보험산업에 부가가치세가 도입될 경우 체감 소비자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상승하게 됨.
- 서비스의 가격에 대한 수요 탄력성에 따라 세금을 누가 내느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누가 세금을 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 금융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범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고 있음.

- 하지만 금융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당위성, 효율성 그리고 기술적 문제 등은 현재도 많은 의견이 존재하며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금융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한 학계의 논의는 금융중개서비스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금융중개서비스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과세가 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임.
- 해외에서 금융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가 시행된 참고사례가 많지 않은 만큼 금융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따른 부작용을 철저히 검토한 후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임.

■ 현재 진행중인 학계의 논의에 비추어 본다면 금융서비스 중 금융중개 이외의 서비스 부분이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 은행의 경우 송금수수료, 수입수수료, 보증료, 신탁보수, ATM 수수료 등 실제로 제공하는 서비스로부터 나오는 이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증권업의 경우 역시 거래수수료 등의 실제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보험산업의 경우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등 사업비 형태로 산출되는 서비스의 사업비차익 부분과 보장성보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보험산업의 경우 사업비의 비중이 큰 상품과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보험산업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면 보장서비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손해보험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보험상품 중 사업비의 비중이 높은 상품이 부가가치세 부과에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것으로 판단함. **kiri**